

의안번호	2212022
의 퇴 인	문정복 의원
회 답 일	2025.9.22.
추계번호	25C4271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급액에 “보육서비스 이용권 상승분”을 반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525억원(연평균 1,505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(안 제4조제5항)	1,686	1,288	1,404	1,517	1,630	7,525	1,505
－ 국비	1,171	895	975	1,054	1,132	5,228	1,046
－ 지방비	515	393	429	463	498	2,297	459

주: 1.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(69.47%)과 집행계수(98.5%)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2. 본 추계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
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(제5항)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에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3 ¹⁾ 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	의무규정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3(보육서비스 이용권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5항 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부모급여 사업의 국고보조율과 집행계수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2026년의 경우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부칙 제2조의 소급규정을 고려하여 연간 추계치의 12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25년 6개월 소급분을 합산하여 산출
 -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증액되는 수당 지급액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하도록 규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방법은 각 세별(0세, 1세) 대상자 수에 보육바우처 단가 상승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
 - (지원 대상) 부모급여²⁾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 - (추가 지원단가) 2025년 각 세별 보육바우처 단가(0세 56.7만원, 1세 50만원)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보육바우처 단가 평균상승률을 적용³⁾

2)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 0세는 매월 100만원, 만 1세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단,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 지급)

[표 2] (부모급여: 0세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 ('25 소급분)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 지급대상자 수 (A, 명)	217,079 (217,226)	227,833	237,996	247,279	255,406	—	—
월 추가지급액(B, 만원)	2.5 (2.7)	2.6	2.7	2.8	2.9	—	—
지원개월 수(C, 개월)	10 (6)	12	12	12	12	—	—
집행계수(% , D)	98.5	98.5	98.5	98.5	98.5	—	—
합계(A×B×C×D, 억원)	880¹⁾	701	760	817	874	4,032	806

주: 1) 2026년의 경우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부칙 제2조의 소급규정을 고려하여 연간 추계치의 12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25년 6개월 소급분을 합산

1.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(69.47%)과 집행계수(98.5%)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2. 본 추계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3] (부모급여: 1세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 ('25 소급분)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 지급대상자 수 (A, 명)	216,540 (228,266)	216,413	227,121	237,221	246,446	—	—
월 추가지급액(B, 만원)	2.2 (2.5)	2.3	2.4	2.5	2.6	—	—
지원개월 수(C, 개월)	10 (6)	12	12	12	12	—	—
집행계수(% , D)	98.5	98.5	98.5	98.5	98.5	—	—
합계(A×B×C×D, 억원)	806¹⁾	587	644	700	756	3,493	699

주: 1) 2026년의 경우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부칙 제2조의 소급규정을 고려하여 연간 추계치의 12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25년 6개월 소급분을 합산

1.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(69.47%)과 집행계수(98.5%)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2. 본 추계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동(만 0~1세) 대상 보육료 지원 바우처 단가의 2022~2025년 평균상승률은 0세 4.35%, 1세 4.43%임

- 개정안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급액에 “보육서비스 이용권 상승분”을 반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525억원(연평균 1,505억원)으로 추계

[표 4] (부모급여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0세 추가재정소요(A)	880	701	760	817	874	4,032	806
1세 추가재정소요(B)	806	587	644	700	756	3,493	699
추가재정소요(C=A+B)	1,686	1,288	1,404	1,517	1,630	7,525	1,505
－ 국비	1,171	895	975	1,054	1,132	5,228	1,046
－ 지방비	515	393	429	463	498	2,297	459

주: 1.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(69.47%)과 집행계수(98.5%)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2. 본 추계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

3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「장래인구추계」(중위시나리오)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